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61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5.

발 의 자 : 백혜련 · 민홍철 · 이수진
부승찬 · 김원이 · 남인순
송재봉 · 문진석 · 김교홍
염태영 · 김준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약 41만 명, 피해금액은 1조 6,393억 원인 것으로 드러남.

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데에 다다른 바, 이처럼 사용자의 근로조건 미준수는 사회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.

그런데 사용자의 단체협약, 취업규칙, 근로계약 등 준수와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함.

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근로조건 등 교육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 법과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, 내용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14조의2(근로조건 등 교육) ①</u> <u>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 법과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, 내용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